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간병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9호)

2024.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개 요	1
II.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9

I. 개 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41인

(2) 제 안 일 : 2024. 6. 3.

(3) 회 부 일 : 2024. 6.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주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증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은 병원에 상주할 수 있는 간병인 고용 등을 통해 간병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의료기관의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간병을 제공하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및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및 제60조의4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에게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적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간병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간병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중·장기 간병인력 양성 계획 수립, 간병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7조의3(간병인 관리·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인력 및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간병인”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

<신 설>	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 관리·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0조의4(간병인력의 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간병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간병인력 양성 계획 2. 간병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원 3. 간병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그 밖에 간병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가. 간병인 관리·감독 강화

- 노인 인구의 증가 등에 따라 간병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인간 사적 계약관계에 의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관리·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간병서비스의 질 저하 및 간병인에 의한 환자 학대 문제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¹⁾
- 간병서비스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4조의2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²⁾
- 그러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를 보면, “간호·간병

1) 이슬비, “요양병원 노인학대 원인, ‘무자격 간병인’ 지목”, 데일리메디, 2022.12.14.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2100)

2)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병서비스 수요가 많은 요양병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사적 간병 서비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³⁾

-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⁴⁾하여 시범운영중인데, 2023년 12월 말 기준 참여 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총 1,543곳 중 실제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713개소 (46.2%)에 불과하고, 참여기관 대부분은 전체 병동 중 일부만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음.⁵⁾

□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적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요양기관이 간병인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 수립, 업무관리자 지정 및 업무수행 기록, 근무형태 지정 및 서약서 작성 등 관리·감독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고,⁶⁾

3)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4) 현재 시범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의 일환으로 급여화하고, 사적 간병을 급여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5) [참고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지급 기준 및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 현황 참조

6) [참고 2]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 참조

- 요양병원의 간병인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024. 4월~)⁷⁾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준수하도록 교육·감독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여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한 인력이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사적 계약을 통해 고용한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의료기관이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나. 간병인력 양성 시책 마련

□ 간병인은 주로 환자 및 보호자와 간병인 간의 사적 계약관계를 통해 고용되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관련되어 신고·등록이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조사연구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그 현황이나 규모를 추정하고 있음.

- 사적 간병 수요는 연인원 기준 2008년 5,774만명에서 10년 뒤인 2018년 8,944만명으로 늘어났으며, 간병인을 활용한 ‘유급 간병비’와 가족 간병인의 ‘기회비용’ 등을 더한 ‘사적 간병비’ 규모는 같은 기간 3조 6,550억원에서 8조 24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⁹⁾

7) [참고 3]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개요

8)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의견 참조

9) 이진선·김진현,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7, 2021, n.1., pp. 97-118.

□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간병인력에 대한 수요 파악을 바탕으로 간병인력 양성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양성기관 설립,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함으로써 간병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간병인력”의 범위에 안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간병인(사적 고용 간병인) 외에 「의료법」 제4조의2제1항¹⁰⁾에 따른 간병지원인력¹¹⁾,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간병서비스(「의료법」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등)의 제공인력인 간병지원인력,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간병인력의 정의 외에도 적절한 자격, 기준,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원의 필요성 및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0)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근무하는 간병지원인력으로는 병동지원인력(통합일반병동 근무) 및 재활지원인력(통합재활병동 근무)이 있음.

- 병동지원인력은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재활지원 인력은 병동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 필요

< 보건복지부 운영 간병서비스 현황 >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거법률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	적정 제공인력 배치를 통한 팀 간호 체계의 총체적인 전문 간호 제공과 병동 환경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에서 입원서비스 제공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지원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의료필요도,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 중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의 통과자	간병인 인건비 지원 * 본인부담률 40~50% 전제	「보건의료기본법」

자료: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2024. 재구성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의견(일부 수용)

-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은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함
 - 간병인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아닌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로 간병인력 양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간병인력 양성시책에 관한 사항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간병인력에 대한 정의, 자격, 업무범위, 양성기관 설립 등에 관한 필요성 및 정책효과 분석, 사회적 합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진행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4. 4월~) 결과를 토대로 관련 시책 마련 및 지원 규정 등은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의사협회 의견(반대)

- 간병인과 환자 간 사적 고용관계에서 의료기관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주체가 되는 것에는 한계가 명확하며, ‘의료기관-간병인’ 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간병인 관리 소홀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존재함.

- 또한 간병인의 관리·감독 방안 및 체계 마련에 따른 의료기관은 행정부담 증가 및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간병인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법제화하는 방향보다는 현재의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및 국가적인 시책에 대한 재정지원책 확보가 필요함.

3) 대한병원협회 의견(반대)

- 현재 입원실에 상주하는 간병인은 병원의 소속 인력이 아닌 주로 환자 및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간병인 소개업체를 경유한 사적 계약을 통해 활동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아닌 간병인을 병원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현재 진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 평가를 토대로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정책 마련 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4) 대한간호협회(반대)

- 개정안은 의료법에 간병인 직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병’을 간호 돌봄의 한 맥락이 아닌 별도 영역으로 분리함으로 간호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간병인 직역을 신설하기보다는 현재 시범사업이 시행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호·간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대한간호조무사협회(반대)

- 간병인은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가 아닌 환자나 보호자에게 고용된 사적 인력임에 따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감독 및 교육하도록 할 경우 간병인의 과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사적 간병인을 직접 관리·교육하여 양성화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

6) 대한요양병원협회(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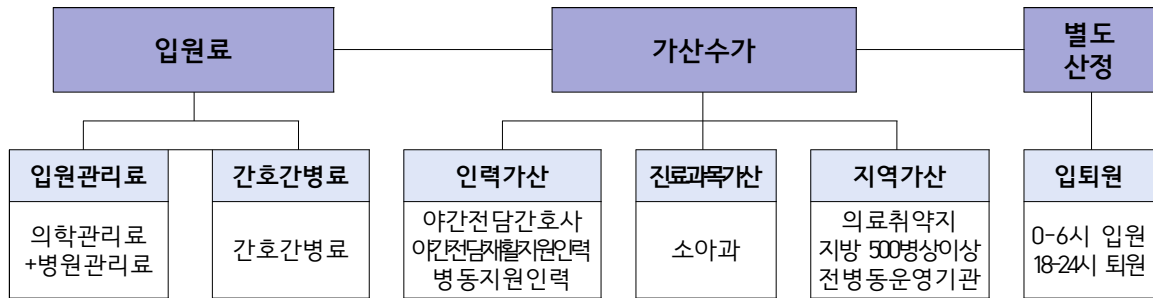
-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는 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로 간병인 고용은 의료기관과 관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려면 우선 국가 차원에서의 간병서비스 제도화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가 제도화 되면 간병서비스의 품질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령에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지급 기준 및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 현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지급 기준 >

○ 수가구성



○ 가산수가

야간전담간호사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병동지원인력
기관별 10% 이상 또는 병동 당 2명 이상 배치 시 가산 ※ 종별 간호사 배치수준에 따라 11,920~32,720원 가산	기관별 10% 이상 또는 병동 당 2명 이상 배치 시 가산 ※ 재활지원인력의 배치수준에 따라 4,030~10,060원 가산	병동지원인력당 환자 수에 따라 가산 ※ 구간별 2,030~12,180원 가산
소아과	의료 취약지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	입퇴원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에 10% 가산 ※ 1세 미만 30%, 1세 이상 8세 미만 10% 가산	간호사 채용 및 처우개선을 위 해 가산 ※ 종별 간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2,960~6,760원 가산	0~6시 입원, 18~24시 퇴원한 경우,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에 각 50% 가산

○ 시설 개선비 지원사업 현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 참여병원의 환자안전 및 간호인력의 업무경감을 도모
하기 위해 '15년부터 시설개선비 지원
* (최근 예산 현황) '20~'22년 84억, '23년 87억
- 그간 국비지원을 통해 시설여건은 충분히 개선, 현장 간호사의 근무여건 및 서비스
내실화가 필요한 단계로 시설개선 사업은 '24년 종료

자료 : 보건복지부

【참고 2】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간병인 관리와 환자에 대한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말한다.
2. “간병”이라 함은 환자에게 일상생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간병인”이라 함은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업무관리자”라 함은 요양병원 개설자가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간호사 중에서 간병인의 업무 수행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요양병원, 간병인, 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관리·운영 계획의 수립) ① 요양병원 개설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간병인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간병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간병인의 간병업무 수행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간병인의 호칭, 복장 및 명찰 패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요양병원 개설자가 효과적인 간병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요양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요양병원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 간병인 자격 및 업무 등

제5조(간병인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감염병의사환자로서 그 감염병의 종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 감염병
 -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제3급 감염병
 -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
 -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 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 ② 간병인은 요양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시작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간병인 자격 확인서를 작성하여 요양병원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간병인은 환자, 보호자 및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 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6조(간병인의 업무) ① 간병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업무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
2. 의료인의 지시 및 감독 하에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 단순 보조업무
3.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보고
4. 환자의 주변 환경 정리
5. 업무관리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행위
6. 그 밖에 환자의 건강 회복과 관련하여 환자 및 그 보호자가 요구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간병이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병인이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간병인의 책무) ① 간병인은 업무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간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간병인은 환자나 그 보호자의 정당한 간병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간병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폭언, 폭행, 학대, 신체 노출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간병인은 환자에게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⑤ 간병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간병인은 「의료법」 제47조에 따른 의료관련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 및 의료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⑦ 간병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관리자가 지정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⑧ 간병인은 요양병원에서 실시하는 간병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⑨ 간병인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⑩ 간병인은 환자에 대한 간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⑪ 그 밖에 간병인은 요양병원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간병인의 권리) ① 간병인은 환자, 보호자 및 요양병원 종사자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및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간병인은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 수행을 지시받는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일체의 차별이나 부당한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③ 간병인은 요양병원 개설자로부터 적절한 간병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④ 간병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및 「의료법」 제47조에 따른 의료관련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요양병원 개설자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⑤ 간병인은 적절한 휴게 공간과 휴게시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3장 간병인의 업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

제9조(업무관리자 지정 등) ①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간병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의 업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요양병원 개설자는 업무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을 해당 요양병원의 의료인 및 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간병인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① 업무관리자는 제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간병인에게 명확하게 지시하여야 한다.

② 간병인은 제1항에 따른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2호에 따른

간병인 연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① 간병인은 요양병원 내에서 간병 업무를 시작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요양병원 개설자는 입원환자의 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간병인의 근무 형태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병인을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업무관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간병인의 월별 근무 기록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요양병원 개설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환자나 그 보호자가 간병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요양병원 개설자가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요양병원 개설자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병원 개설자가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요양병원의 개설자는 간병인이 환자와 그 보호자와 계약으로 정한 비용 외 별도의 금품을 지급받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⑦ 요양병원의 개설자는 간병인이 업무관리자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간병 업무에서 배제한다. 이 경우에도 환자에게 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다른 간병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사회 상규 또는 요양병원 내규에 따른다.

【별표 1】 일상생활 보조업무 범위(제6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간병인 연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별지 제1호 서식】 간병인 자격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간병인 주간 업무 기록지

【별지 제3호 서식】 간병인 업무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간병인 월별 근무 기록지

【별지 제5호 서식】 표준 간병 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 환자(보호자) 서약서

【참고 3】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개요
---------------	--------------------------

□ 사업 개요

- **(목적)** ▶ 시범사업 모형 검증·보완 및 ▶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 조성
- **(사업기간)** '24. 4월~ '25. 12월 * '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경 可
 - * 공모 및 기관선정('24.2~3월), 시범사업 운영('24.4월~12월), 중간평가(~12월)
- **(소요예산)** '24년 85억원(사업비 80억, 연구비 5억)
- **(대상기관)** 요양병원 20개소(공모 선정), 병원별 최대 60명상
 - * '24년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 지역과 연계

□ 지원내용

- **(대상)** ▶ 의료最高度·의료高度 + ▶ 장기요양 인정신청 자격* 있는 자
 - * 통합판정심사를 통해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의 간병필요가 있는 자 선발
- **(절차)** 신청 → 통합판정 심사 →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지원기준)** 본인부담률 40~50% 전제, 간병인 인건비* 지원
 - * 月 급여 258만원, 퇴직금 및 보험료 54만원

< 모형별 시범사업 현황 >

구분	A형	B형	C형
간병인력 지원	17명	20명	25명
배치기준(주간근무)	주간 1:8	주간 1:6	주간 1:4~1:6 미만
요양병원 수(20개소)	2개소	10개소	8개소
본인부담금(률)	29.2만원(40%)	34.4만원(40%)	53.8만원(50%)